긴급 소액자금 특례 대출에 관한 중요사항 설명서

생활복지자금에 관한 고지사항

(대출금 교부에 대해)

1 당 협의회는 대출을 결정하여 차입 신청인이 서명 날인한 차용서를 제출했을 때는 대출 결정에 따른 자금(대출금)을 차입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계좌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차입자 본인에게 교부합니다.

(관리 시스템 등록과 신용정보에 대한 회답에 대해)

2 차입자가 현외로 전출한 경우, 전국 사회복지협의회의 관리 시스템에 현외 전출자로서 생활복지자금의 대출에 관한 정보를 등록합니다.

또한, 타 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생활복지자금에 관한 신용정보 조회가 있었을 경우, 상환 잔액 등 필요한 정보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합니다.

(민생위원에 대한 통지에 대해)

3 차입 신청 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상담 지원 활동을 하는 민생위원에게 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(연체이자에 대해)

4 상환 계획에 정해진 상환 기한일까지 상환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는 상환 기한 후의 잔여 원금에 대해 연이율 3.0%의 연체이자를 징수합니다.

(독촉에 대해)

5 최종 상환 기한일이 지나도 전액 상환이 되지 않을 경우는 본 협의회 또는 시구정촌 사회복지협의회가 차입자에게 독촉합니다.

또한, 체납이 계속될 때는 본 협의회 또는 시구정촌 사회복지협의회가 가계 상황 등에 대해 청취 및 면접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

(구제 제도에 대해)

6 차입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했을 때는 상환금 지불을 일시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.

(합의 법원에 대해)

- 7 차입자와 해당 사회복지협의회 사이에 소송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회복지협의회의 소재지 관할 법원을 합의 법원으로 합니다.
- 8 생활복지자금 이용에 관한 민원

생활복지자금 이용에 관한 차입 신청인 또는 차입자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민원 접수창구가 도도부현마다설치되어 있으며, 별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.

- (1) 각 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 민원 접수창구 담당부과 일람(전화·FAX)
- (2) 복지 서비스 운영 적정화 위원회 각 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연락처 일람(전화)
- (각 도도부현 사회복지협의회에 상담해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, 복지 서비스 운영 적정화 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)

차입 기간 중의 준수사항

본 제도는 '자금 대출과 필요한 지원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경제적 자립과 생활 의욕의 조장 촉진, 재택복지 및 사회참가 촉진을 도모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'을 목적으로 하며, 차입자는 다음 사항(생활복지자금 대출제도 요강, 요령 등에서 규정된 사항 등)을 엄수해야 한다.

- 1 대출 결정 후에 송부하는 상환 계획에 따라 소정의 지불 기일까지 정해진 상환금을 납부해야 한다.
- 2 차입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신고한다.
 - (1) 주소를 변경했을 때
 - (2) 성씨 또는 이름을 변경했을 때
 - (3) 사망 또는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
 - (4) 천재지변, 화재, 기타 중대한 재해를 입었을 때
- 3 차입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하거나 대출금의 교부를 취소할 수 있다.
 - (1) 다른 차입금 상환에 충당하는 등 대출금의 용도를 함부로 변경하거나 다른 데에 유용한 경우
 - (2) 허위 신청, 부정한 수단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
 - (3) 고의로 상환금 지불을 소홀히 한 경우
 - (4) 대출 목적을 달성할 가망이 없는 경우

레이와 녀 웤 잌

상기 사항에 대해 모든 내용을 이해했습니다.

	v11	-
	A CI	0
	רא הא	-

주소

차입자

※본 자금은 대출금이며 상환(변제)해야 합니다.

※본 서류의 원본은 해당 사회복지협의회에 제출하고, 부본(사본)은 차입 신청인이 보유합니다.